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9 선고 2020가단21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관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채지연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변론 종결2021. 9. 14.

판결 선고2021. 11.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87,058,675원 및 그 중 71,428,57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630,1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1984. 10. 3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D와 전 배우자 사이에 난 자녀들이다.

나. D는 E조합에 총 9개의 출자금 및 예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 2. 26. D 명의 예금 계좌가 모두 해지되어 60,147,318원이 출금되었고, 그 중 50,000,000원이 피고 C의 계좌로, 나머지 10,147,318원이 원고의 계좌로 각 지급되었다.

다. D는 2019. 4. 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2019. 12. 27. 망인 소유의 대구 동구 F 대 171m² 및 그 지상 건물과 G 대 84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원고 3/7, 피고들 각 2/7)로 2019. 4. 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2020. 1. 31.	650,000,000
피고 B	2020. 2. 19.	600,000,000
피고 C	2020. 2. 19.	600,000,000
합계		1,850,000,000

바. 소외 회사는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20. 2. 20.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 17,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체로서 1,850,000,000원에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상속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 소외 회사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지분 매각의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850,000,000원 중 원고는

792,857,142원($=1,850,000,000\text{원} \times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피고들은 각 528,571,428원($=1,850,000,000\text{원} \times 3/7$)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650,000,000원을 지급받고(142,857,142원 부족), 피고들은 각 600,000,000원을 지급받아 자신들의 법정상속분보다 71,428,571원을 초과하여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71,428,571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2018. 2. 26. 망인이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하자 망인 명의 E조합 예금계좌 9개를 해지하면서 잔액 60,147,318원을 출금하여 그 중 5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원고에게는 10,147,318원만 지급하였다. 위 예금채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그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5,777,422원($=60,147,318\text{원} \times 3/7$)은 원고에게 상속되어야 함에도 위 피고가 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중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5,630,104원($=25,777,422\text{원} - 10,147,318\text{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 상속 이후 별도로 각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체로서 1,850,000,000원에 소외 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전체로 매매하고 그 전체 매도대금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합의서나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소외 회사는 망인 사망 후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원, 피고들과 각자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20. 1. 30. 자신의 지분을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의사를 번복하여 매매대금을 6억 5천만 원으로 올려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하였다.

(3) 원고의 딸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할 무렵인 2020. 2. 7. 피고 C와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 C가 I에게 원고가 얼마에 매매계약을 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I은 평당 시세대로 계약했다고 하며 매매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피고 C는 아직 계약을 안했는데 시세에 맞춰서 하려고 한다고 하는가 하면, I과 피고 C는 서로 각자 계약해도 되는 것이므로 '같이 엮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갑 제25호증의 1 중 11, 12면).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각자 계약하기로 하면서 서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를 채무자로 한 J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피고 C의 채무에 대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와 피고들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근저당권자인 J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법정상속분의 지분대로 나누기로 한 경위가 되었다거나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은 피고 C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면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취득세를 부담한 것이나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수임료를 구하면서 원고의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구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을 원인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상속 이후 발생한 매매대금 분할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2018. 2. 26. 망인 명의의 E조합 예금계좌에서 60,147,318원이 출금되어 그 중 50,000,000원이 피고 C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예금 출금시 망인은 생존하여 있었으므로 위 60,147,318원은 망인의 재산으로서 망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고, 위 돈이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그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이 원고에게 상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피고 C에게 지급된 위 5천만 원은 망인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을, 피고 C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망인의 예금을 출금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망인은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원고가 망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조합의 직원이 위 출금 당시 망인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아 위 돈을 인출한 사실, 당시 위 출금에 동의한 망인의 의사능력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당시 망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E조합의 직원이 망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어보였다면 출금 등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452호로 청구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는데 그 심판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8. 2. 26.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한 것이고 달리 망인이 피고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서회경